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17.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과징금 부과),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표시 의무, 소비자에게 계량기와 상품의 계량정보 제공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량관리를 강화하는 근거신설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량표시상품 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제7호)

-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정량표시상품의 대상 범위를 현행 길이·질량·부피로 표시되는 상품 외에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상품으로 확대

나. 자체수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12조)

- 자체수리자의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다. 제조결합 계량기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등 신설(안 제30조)

- 제조자 등이 계량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량의 오차에 영향을 주는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위해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라.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검정유효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33조)

- 계량기의 수리는 원칙적으로 제작업과 수리업을 등록한 자 등이 수행토록하고, 수리하여 검정을 받은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의토록 규정

마. 자체정기검사사업제도 신설(안 제40조, 제42조)

- 검사요원, 설비 등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이용자의 경우 스스로 계량기(정기검사 대상)를 검사·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바. 측정용 계량기에 대한 교정관리 체계 구축(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 교정절차, 교정주기 등 교정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일부 계량기 중 이미 현장에서 자율 교정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등 스스로 품질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율 교정관리 토록 하는 규정 신설

사. 불법 이익금 과징금 부과 및 위반업소 명단공표 근거 신설(안 제58조, 제62조)

- 계량기 불법조작자와 그 위반사실을 공개하고 필요시 계량기 위반조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 이익금에 대한 과징금부과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

아.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안 제61조)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제한적 전문지식을 갖춘 소비자 단체 소속 직원 등을 소비자감시원으로 지정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일반 이용자 등의 자율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

자. 계량기 이력관리 등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안 제68조, 제69조)

- 계량기 이력관리 등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계량종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차. 처벌위주에서 개선유도형 벌칙운영으로 변경(안 제83조)

- 법정단위 사용 등 처벌보다는 권고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전 1회에 한하여 개선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전화 : 02-509-7230, 전송 : 02-509-7414)